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2.13>

채권의 종류(제37조 관련)

1. 제5조제2항에 따른 채권
2. 영 제2조에 따른 채권

가. 내국세

- 1) 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 2) 법인세
법인세
- 3)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
- 4)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 5) 재평가세
재평가세
- 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7)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기타 특별 소비세
- 8) 주 세
주 세
기타 주세
- 9) 전화세
전화세

10)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11) 인지세

인지세

12)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13) 기타 내국세

과년도 수입

기타 내국세

나. 관 세

1) 관 세

관 세

기타 관세

다. 방위세

1) 방위세

방위세

기타 방위세

라. 교통·에너지·환경세

1)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교통세

기타 교통·에너지·환경세

마. 교육세

1) 교육세

교육세

기타 교육세

바.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농어촌특별세

사.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종합부동산세